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58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해양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1) 해양교육과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

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의결정족수, 위원의 해임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3)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한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의 도입
(안 제9조)

- 1)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을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지정요건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최근 2년 이상 해양교육 실시 실적이 있으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및 단체로 정하고,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를 정함
- 3)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을 정함으로써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의 도입(안 제12조)

- 1) 분야별 사회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교육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

하여 해양교육시설 또는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 등을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계획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절차를 정함

3)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를 정함으로써 해양교육전문강사의 체계적 양성을 통하여 해양교육의 장기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학교해양교육 및 사회해양교육의 지원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제정법률에서 학교해양교육 및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대상과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학교해양교육 및 사회해양교육을 위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지원항목을 정하고,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정함.

3) 학교해양교육 및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경비지원의 대상과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각종 해양문화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등이 협력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평가대상 및 절차의 도입(안 제19조부터 안 제20조)

- 1) 제정법 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를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평가대상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를 정하고, 평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을 정하며, 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개방법 등을 정함.
- 3)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재원을 지원받는 시설 및 단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해양교육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교육시설 및 단체)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양교육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해양재단

2. 교원 또는 해양교육전문강사가 1명 이상 상근하여 최근 2년간 매년 해양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장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해양교육

시설 및 단체의 활동현황 및 실태와 해양문화 자료의 조사·연구·발굴·수집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교육센터의 운영 현황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운영 현황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운영 및 해양교육전문강사 양성 현황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 현황
5. 법 제21조에 따른 해양문화의 확산을 위한 연구, 교류, 사업 운영 현황
6.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국민인식
7. 그 밖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연구기관·법인·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법 제2조에 따

른 정보체계로 구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양교육시설 또는 같은 조제7호에 따른 해양교육단체일 것

2. 최근 2년간 매년 해양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출 것

②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교육센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센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운영정지 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그 위원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로,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해양교육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시·도의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종사자 등 해양교육 관련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시·도의 해양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④ 지역협의회 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역협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 제2항·제6항·제7항 및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 협의회"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제12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계획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해양교육 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제1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그밖에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해양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인원의 수 및 홍보 방안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학교해양교육을 위한 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17조제5항에 따

라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지원항목

가. 학교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나. 학교해양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비

다. 학교해양교육에 대한 교과용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비

라. 학교해양교육 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제17조(사회해양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 해양교육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인원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해양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연중 교육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해양교육전문강사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사회해양교육을 위한 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18조제5항에 따

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시설 및 단체로 하고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사회해양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3. 사회해양교육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4. 사회해양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제19조(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법 제9조제4항·제13조제3항·제16조제2항·제17조제5항·제18조제5항·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 교육과정의 적절성, 효과성, 교육운영의 적절성, 교육실적 등
2. 해양교육전문강사 보유현황 : 전문인력 확보현황, 운영 및 배치 적합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실적 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 시설 및 장비 확보 및 관리 현황, 안전점검 등,

③ 제2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평가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로 실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평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가의 절차와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해양문화 자산과 자료의 발굴·수집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번역·출판·정보화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2.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의 발굴 및 연구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
5. 그밖에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

를 책자로 발간하거나 전자정보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해양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 시설 및 단체 등의 평가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2월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지정기준	기본 요건
교육과정·교육 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가. 해양교육을 위한 연중 교육계획 나. 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 계획 [교육기관 구성 및 운영 방향, 운영 조직 및 행정인력, 학습지원 시스템, 교육과정 운영 신청 분야, 교육과정 운영방안, 학습자 모집 대상 및 모집 계획, 학습자 모집 인원, 교육 관리계획(출석 관리, 평가 관리 등), 교육기능 수행 관련 전반] 나. 연간 운영경비 조달계획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1) 해양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3년 이상의 해양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해양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해양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는 전담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여야 하며,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다음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고 있을 것 1) 강의실은 실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하나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 사무실 및 안내시설은 사무 및 시설관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되, 강의실 등 다른 목적의 시설과 분리되어 있을 것 3) 컴퓨터, 복사기, 팩스 등의 사무용 기기 구비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나. 학습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당, 회의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 시설,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에는 화장실,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 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안전시설 및 소방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신청 기관·단체가 적정한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확보한 경우도 요건 충족으로 간주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	법 제29조제1항	150	300	500

여 계속 운영한 경우 나.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 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교육프로 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9조제2항	10	15	20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226